

KT노동조합 조합원현장조직 KT전국민주동지회

140-133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80-10동전빌딩301호 ☎(02)701-0070, F 02)704-4441

문서번호: 민동회 2013-11

시행일자: 2013. 11. 11.

수 신: KT노동조합 정윤모위원장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차동206 KT본사6층(010-6766-1145)

제 목: KT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중단 촉구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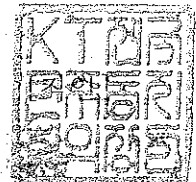
- 가. 이석채 회장의 CEO 연임 지지 성명서 발표(2011.11.22)
- 나. 고용노동부 KT특별근로감독 우려 표명 성명서 발표(2012.2.3)
- 다. 조합원 문자수신 거부 조직적 서명 노동조합집행부 지침(2013.4.5)
- 라. 조합원 문자수신 거부 관련 인터넷진흥원 민원제기(2013.7.5)
- 마. 민주당의 CEO 사퇴 요구에 대한 KT노동조합 입장(2013.8.30)
- 바. 안전행정부 시정조치요구서(2013.11.4)

2.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이 기능해야 함에도 KT노동조합의 반민주적이고 어용적 행태는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까다달았으며, 결국 노동조합 집행부가 옹호하였던 CEO(이석채 회장)는 불법부실 경영에 대한 검찰수사(3회 압수수색과 사법처리 예정)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법부실경영의 주범인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민주동지회)의 소식지(민주통신)를 노동조합 내부에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합원 서명을 노동조합이 강압적으로 받은 사실은 현재 KT노동조합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문자수신 거부를 서명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하달하여 받은 서명을 민주동지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과 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이고 위원장 탄핵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석채 회장의 사퇴시점에 맞추어 집행부 역시 총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끝.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김 석 균



이 우편물은 2013-11-11
제 311800801913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원천로우체국점